

##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허가일	처리기간 보건복지부: 22일 시·도: 1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법인	법인의 명칭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전화번호
	합병 목적	
	사업의 종별	

자산	기본 재산	목적 사업용	종류	규모	평가액 (천원)	연간수익액 (천원)	출연자
			계				
	수익용						
		계					
	보통 재산	종류	수량		가액(천원)		

임직원	임원	직위	임기	성명	생년월일	주소
	직원	총 인원	명	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	명	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**보건복지부장관**  
**시·도지사**

신청인  
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<p>1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</p> <p>가.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·정관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</p> <p>나. 정관변경안 1부</p> <p>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</p> <p>라.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</p> <p>마. 재산의 평가조서 1부(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</p> <p>바. 재산의 수익조서 1부(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,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)</p> <p>2.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</p> <p>가. 합병취지서·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</p> <p>나.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</p> <p>다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</p>	수수료 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등기부 등본 2. 토지등기부 등본 3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	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